



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

의안번호

제18호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민병춘 의원 등 4명
제출연월일	2026. 2. 9.

#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2. 9.

대표발의자: 민병춘

공동발의자: 홍태의, 김종육  
이태모

## 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장을 삭제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, 고충 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한 사항(안 제5조, 제11조)
- 나.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보험 가입 범위 정비에 대한 사항(안 제16조)
- 다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·복리증진을 위한 사항(안 제24조)
- 라.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제6장 삭제(안 제29조, 제30조 삭제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기타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조례안예고: 2026. 2. 9. ~ 2. 14. 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 
에서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 
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수탁자의 의무)”를 “(수탁자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  
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보험”을 “보험 또는 공제”로 한다.

제24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 
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호(종전  
의 제7호) 중 “보육을”을 “보육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”로 한다.

3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

4.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

제6장(제29조 및 제30조)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	민병춘 의원 등 4명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<u>취학 전 아동</u>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1조(수당 등) <u>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제1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의 <u>취학 전 아동</u>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수당 등) <u>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6조(수탁자의 준수사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

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  
·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 
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 
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 
다.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  
다.

⑦ (생략)

제24조(보조금의 지급) 시장은 법  
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  
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 
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 
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  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 
는 비용

제6장 보칙

제29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 
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  
과 보건복지부, 보육사업 지침

-----  
-----  
-----  
--- 보험 또는 공제 -----  
-----  
---

⑦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보조금의 지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 
복리증진을 위한 지원

4.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 
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

5. ~ 8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  
까지와 같음)

9. ----- 보육  
및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 
---

<삭제>

<삭제>

에 따른다.

제3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
한다.

<삭 제>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